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 행위 규제
법」 등, 상위법령에 부과 징수와 관련한 근거가 있어 규칙의
실효성이 없으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기관의 책무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
칙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민원여권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 3396-4774, FAX : 3396-8652 nawo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